

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31조제2항	100
--	-----------	-----
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부 칙
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유효기간)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- 1.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.
 - 2.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(이하“창업 등”이라 한다)한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.
 - 3.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 창업 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확인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.

제16조 중 “법 제31조제2항”을 “법 제31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2호의 표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
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3조의2(유효기간)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/u> <u>1.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.</u> <u>2.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(이하“창업 등”이라 한다)한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.</u> <u>3.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 창업 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확인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.</u>
제16조(과태료 부과기준) <u>법 제31조제2항</u>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	제16조(과태료 부과기준) <u>법 제31조제3항</u>----- -----.